

商標登録 取消審判制度의 問

改正法下에서 取消審判의 請求適格·提起

IV. 取消審判의 請求適格

1. 現行 商標法은 商標登録의 取消審判은 利害關係人에 한하여 請求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43조 제2항).

그趣旨는 取消審判의 請求가 남용되는 것을 防止함으로써 特許廳 業務의 누적을 방지함과 아울러 商標權者가 不必要하게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단, 代理人等에 의한 登録으로 因한 取消審判은 登録商標에 관하여 원래 權利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者만이 提起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것은 同 取消事由의 立法趣旨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2. 그러한立法趣旨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이지만, 문제는 그 利害關係人的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筆者の 견해는 그 범위는 一律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각 取消事由의 性質 내지는立法의趣旨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즉, 商標權者的誤認, 混同使用으로 因한取消, 使用權者的誤認, 混同使用으로 因한取消는 모두 一般公衆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러한 取消事由를 구성하는 行爲에 의하여 一般公衆 누구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取消事由들에 관하여는 “利害關係人”이란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不使用으로 取消의 경우에는 그立法趣旨가 不使用되고 있는 登録商標를 使用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그 사용을開放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利害關係人”이란 “取消審判의 對象이 되어 있는 登録商標의 指定商品과同一 또는類似한 製品을 製造 또는 販賣등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이客觀적으로明白한者”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妥當하지 않을까 생각된다(특히 단순 登錄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商標法下에서는 不使用으로 因한取消의 경우에도 利害關係人的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必要는 없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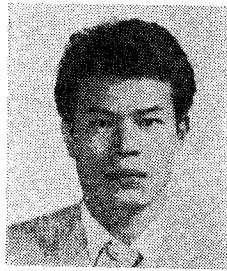
現行 商標法上의 使用默認等으로 因한取消의 경우에는, 1981年舊商標法과는 달리, 利害關係人の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하여理論上 적지않은論難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特許廳 實務上은 위와 같이 利害關係人の 범위를 각 取消事由의 性質 내지는立法趣旨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一律的으로 위에서 언급한 不使用으로 因한取消의 경우의 利害關係人の 범위와 같거나類似하게 보고 있다.

특히 大法院 判例는 利害關係人の概念에 關하여 “取消審判의 對象이 되어 있는 登録商標와同一 또는類似한 商標를 使用한 바 있거나 現在 使用하고 있음으로서 그 登録商標의 消滅에直接의인 利害關係가 있는者” 또는 取消審判의 對象이 되어 있는 登録商標의 存續으로 피해를 받는直接의이고도 現實의인 利害關係가 있는

題點(完)

期間分析



趙泰衍
〈辯護士·辨理士〉

論壇解說

次

- I. 머리말
- II. 商標登録取消審判制度의 重要性
- III. 取消의 事由
- IV. 取消審判의 請求適格
- V. 取消審判請求의 提起期間
- VI. 取消의 效果
- VII. 맺는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者”등의 定義를 내림으로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온 傾向이 있다.

이 問題를 根本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取消審判에 있어서의 利害關係人 要件을 아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한다면 不使用으로 因한 取消와 같은 取消事由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一般 爭訟法上의 訴의 利益의 概念을 도입하여 現行法上의 利害關係人 要件이 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V. 取消審判請求의 提起期間

1. 現行 商標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取消審判은 同號에 規定된 事實이 없어진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既述한 Ⅲ의 10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現行 商標法 제45조 제1항 제4내지 7호, 제45조의 2 所定의 各 取消事由에 관한 取消審判請求의 提起期間에 대하여는 論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取消審判請求의 提起期間에 관한 規定의 趣旨는 위 各 取消事由에 기한 取消審判制度의 제재적 성격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一定한期間內에만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商標制度의 法的 安定性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現行 商標法 제45조 제4항은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審判請求를 한 날 후에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事實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問題는 이 規定과 위에서 언급한 審判請求 提起期間에 관한 規定이 서로 상충하여 해석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代理人等에 의한 登錄으로 因한 取消事由, 즉 現行 商標法 제45조 제1항 제8호 所定의 取消事由의 경우에는 取消審判의 對象이 되어 있는 商標의 登錄日로부터 5年内에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에 관하여는 特別한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만 審判請求의 提起期間이 5年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2. 먼저 제45조 제4항을 反對 解釋하면 審判請求前에 同項에 열거된 위 各 取消事由에 해당하는 事實이 없어진 경우에는 取消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제44조 제2항은 同項에 열거된 위 各 取消事由에 해당하는 事實이 없어진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는 趣旨로 규정하고 있어 제45조 제4항과 모순되고 있다.

이것은 明白한 立法上의 오류로서 各 取消事由의 性質 내지는 立法趣旨를 고려하여 위 條文

들을 改正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서술의 편의상 먼저 不使用으로 因한 取消事由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取消事由는 登錄商標의 使用을 권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取消事由를 구성하는 不使用期間이 경과한 후에라도 일단 問題가 되는 商標를 사용한 以上 그 전의 不使用으로 因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봄이妥當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現行 商標法 제44조 제2항이 不使用으로 因한 取消의 경우에도 不使用事實이 없어진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한 것은妥當性을 결여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不使用으로 因한 取消審判 請求後에 問題가 되는 商標를 사용한 경우에까지 不使用으로 因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한다면 實事上 不使用으로 因한 取消審判制度는 그 效用을 상실하여 버리고 말 것이다(소위 實事審辯論終結時라고 할 수 있는 取消審判의 항고심판 심리 종결시까지는 取消審判이 請求된 날로 부터 통상 1년반 내지는 2년 程度의 長期間이 所要되는 반面, 商標의 使用은 간단한 광고만으로도 認定될 수 있다).

따라서 不使用으로 因한 取消의 경우에는 審判請求 後에는 問題가 되는 商標를 使用하더라도 取消事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必要性이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現行 商標法 제45조 제4항이 不使用으로 因한 取消와 關聯하여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 것은妥當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商標權者의 誤認, 混同使用으로 因한 取消나 使用權者의 誤認, 混同使用으로 因한 取消制度는 公益에 違反하였다라는 점에 對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事由들에 기한 取消審判請求는 그러한 事由들이 消滅하더라도 商標制度의 法的安定性을 해치지 않는 一定한 期間내에는 可能하도록 함이妥當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現行 商標法 제44조 제2항이 그러한 取消事由들에 관하여 審判請求 提起期間을 許容

한 것은妥當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反面 제45조 제4항상의 그러한 取消事由들에 關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問題는 使用默認等으로 因한 取消制度이다.

現行 商標法上의 使用默認等으로 因한 取消審判制度는 既述한 바와 같은 商標의 使用許諾과 關聯된 商品의 品質의 同一性 保章要件의 폐지로 인하여 그 制度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妥當한가에 관하여 再檢討를 要할 만큼 公益的性格이 약하다.

즉, 그 制度의 實益으로서는 登錄商標의 使用關係를 商標登錄原簿를 통하여 公示하도록 間接的으로 強制함에 의하여 法律關係를 明確히 하고 商標의 使用秩序의 確立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使用權 設定登錄없이 商標를 使用하게 한 경우에 그 정도의 公益性에 기하여 使用權 設定登錄을 한 후에도 3년씩이나 取消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은 지나친다 못해 비난을 받을 여지 조차 없지 않다.

따라서 默認使用等으로 因한 取消事由는 제45조 제4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족하고, 제44조 제2항으로 부터는 삭제함이妥當하리라고 본다.

VI. 取消의 効果

1. 現行 商標法 제48조 제1항 商標登錄을 取消한다는 審決 또는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商標權은 그때부터 消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無効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적 効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取消審判制度가 無効審判制度와는 달리 원래는 有効한 商標登錄을 後發의 事由로 인하여 消滅시키는 制度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代理人等의 登錄으로 因한 取消는理論上으로는 原始的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制度 자체의 特殊性과 파리協約의 규정을 고려하여 取消事由로 하고 있는 듯 하다).

2. 現行 商標法 제9조 제1항 제8호는 商標權이 消滅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他

人の商標와同一 또는類似한商標로서 그指定商品과同一 또는類似한商品에使用하는商標는 그他人의商標가登録失効日前1年以上使用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登録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또한특허청예규제83-4호인商標審判基準에의하면取消審判계류중인登録商標와同一 또는類似한商標의出願에對하여는審查保留措置를하지아니하고즉시처리하도록되어있다). 위규정만에의하면取消審判에의하여商標登録이取消, 즉商標權이消滅하더라도많은時間과費用을들인審判請求人이나그밖의자는그商標나또는그와類似한商標를그取消審決이나判決이確定된날로부터相當한期間이경과하지않으면登録을받을수없는반면,被審判請求人,즉從前의商標權者は자신의商標登録이取消審判에의하여取消된후언제든지再登録을받을수있다는이상한結果를초래하게된다. 그러한결과는商標의取消審判制度를事實上無用化시키게된다. 따라서現行商標法제9조제5항은제45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등의규정에해당하는것을이유로하여商標登録取消의審決 또는判決이確定된商標權者나그登録商標를使用한他人은그審決 또는判決이确定된날로부터3년이경과한후가아니면消滅된登録商標와同一 또는類似한商標를그指定商品과同一 또는類似한商品에對하여登録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여위와같은폐단을예방하였다. 그런데이상한것은무엇때문에제45조제1항제8호가이규정속에열거된제45조제1항각호속에포함되지않았는지이해가가지않는다는점이다. 이규정의입법취지를고려할때특별한이유를발견할수가없다.

그렇다면제45조제1항제8호도이규정에나열된제45조제1항각호속에포함되도록개정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같은이유로제45조제2항도위제9조제5항속에서같이나열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한가지더지적하고싶은점은위제9조제5항은取消된登録商標의商標權者나그商標를

使用한他人은取消가된날로부터“3年”의期間이경과하기전에는一定한商標를登録를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지만그期間이비교적짧아서取消된登録商標의商標權者が取消審判請求人보다우선하여다시그商標에관하여登録을받을수있는可能性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따라서3년의期間을5년정도로연장하는것이좋으리라고생각된다.

3. 그러나위와같은現行商標法제9조제5항과같은제도적장치에도불구하고법해석상,실무상의헛점을이용하여商標權者が取消審判制度의不利益을교묘하게회피하는파렴치한수법들이행하여지고있으며, 그결과取消審判制度는사실상아무런쓸모가없는制度로化하여가고있다.

(1) 첫번째手法은審判被請求人인商標權者が審判의對象으로되어있는登録商標를審判계류중에자진하여포기한후즉시그商標를新規出願하는方法이다.

取消審判계류중에審判被請求人이審判의對象인登録商標를자진하여포기(즉,商標登録의抹消)하면實務上당해取消審判은審判의目的物이消滅되었다는이유로각하되게된다(이점은大法院判例에의하여도確認된바있다). 그와같이審判이却下된경우에는審判被請求人은現行商標法제9조제5항所定의不利益을입지않아도되고, 따라서審判被請求人은그포기후즉시포기한商標를新規出願하여그商標의登録을받을수있게된다.

그반면에審判請求人은포기의事實자체도審判의却下審決이나判決을받은후에야알게될뿐만아니라위에서언급한商標法제9조제1항제8호의규정으로인하여相當한期間內에는審判의對象이었던商標와同一 또는類似한商標에관하여登録을받을수없게된다. 이는明白히不合理한결과로서是正되지않으면안될것이며, 그것이是正되지않는한取消審判制度는無用之物이나하등다를바없다고할것이다. 그것을是正하기위한方法으로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商標權의포기가있을

경우에 取消審判請求를 却下하는 現在의 實務例를 전제로 한다면 取消審判請求 후에 그 審判의 對象이 되어 있는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의 全部 또는 一部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商標權者(또는 그 商標를 使用한 他人)은 그 포기등록을 한 날로 부터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5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그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포기된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對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新設하여야 할 것이다.

(2) 또 한가지 手法은 取消審判 계류중에 審判被請求인이 그 取消審判의 對象이 되어 있는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는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을 하여 取消審決 確定前에 登錄을 받아 두는 方法이다. 그렇게 되면 取消審決이 確定되더라도 審判請求人은 審判被請求인의 그 聯合商標登錄으로 인하여 取消審判의 對象이 되었던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에 對하여 登錄을 받거나 그러한 商標을 使用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取消審判 계류중에 위와 같은 聯合商標出願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당해 取消審判의 審決이나 判決 確定時까지 그 審查를 보류하도록 하여나 하나, 현재 實務上 그러한 審查保留措置는 취하여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審查保留措置를 明文化시키든지 또는 取消審判請求 후에는 그 審判請求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登錄商標의 商標權者는 그 取消審判의 審決이나 判決이 確定되기 전에는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는 聯合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新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폐단은 審判被請求인이 審判계류중에 聯合商標의 登錄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審判被請求인이 審判이 提起되기 前에 이미 審判의 對象이 될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는 聯合商標登錄을 받아 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긴다. 따라서 取消審判制度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하

여 取消의 事由를 안고 있는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는 聯合商標登錄은 모두 한꺼번에 取消의 對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立法的 措置가 必要하리라고 생각된다.

4.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商標法上 고려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만으로는 取消審判被請求인의 脱法行爲를 완전히 봉쇄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取消審判이 提起되어 1심이 審判請求인의 取消請求를 認容한 경우 審判被請求인은 항고심판을 제기한 후 그 항고심판 계류중에(단, 審判請求인이 答辯書를 제출하기 전에) 그 항고심판을 자진 取下하고 자신의 직원이나 인척으로 하여금 그 登錄이 取消된 商標와 같은 商標를 新規出願하게 한 후 그것이 登錄되면 그 직원이나 인척으로 부터 移轉받는 方法에 의하여 脱法行爲를 자행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方法의 脱法行爲外에도, 많은 時間을 費用을 들여 取消事由를 안고 있는 登錄商標를 取消審判에 의하여 取消시킨 審判請求人과 당해 取消審判의 關係當事者以外의 第3者の 法的 地位가 現行 商標法上 同一하게 되어 있음을 기회로 하여 당해 取消審判에 의하여 자신의 登錄商標가 取消된 審判被請求인은 審判請求인이 미쳐 그 取消된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出願하기 前에 자신의 직원이나 인척의 명의로 그 取消된 登錄商標와 같은 商標를 出願하게 한 후 그것이 登錄되면 그 직원이나 인척으로 부터 移轉받는 方法에 의하여 取消의 不利益을 면할 수 있는 可能성이 얼마든지 있다.

위와 같은 脱法行爲들은 既述한 바와 같이 商標審查基準이 取消審判 계류중인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의 出願에 對하여는 審查保留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處理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商標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의 判斷時點이 出願時 基準으로 되어 있으나 大法院判例가 登錄時 基準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등의 복합적인 事由로 인하여 可能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商標審查基準과 商標法上의 규정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순수한 法理論上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取消審判制度를 強化 내지는 의미있게 한다는 政策的 次元에서 取消審判에 의하여 既商標登錄을 取消시킨 審判請求인이 당해 取消審判의 關係當事者以外의 第3者에 對하여도 당해 商標와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의 出願에 관하여 비록 단기간이나마 우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立法的措置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VII. 맷 는 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現行 商標法의 商

標登錄 取消審判制度는 그立法過程에서 충분한 法理的, 社會經濟的 研究檢討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많은 問題點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 取消事由나 取消審判의 請求適格, 取消審判의 提起期間에 관련된 問題點들은 비록 어려움은 있을 지라도 관계 조문들의立法趣旨를 고려하여 해석상의 조화를 이루도록努力한다면 短期間은 그런대로 運用이可能한 面도 없지 않다. 그러나 取消의 効果에 關한 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取消審判의 결과에 따른 不利益을 회피하기 위한 脱法行爲들로 因하여 事實上 取消審判制度는 無用之物化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脱法行爲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된다. <※>

(案) 月刊「發明特許」原稿募集 (内)

本誌는 讀者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工業所有權 專門誌입니다. 本誌는 製作에 讀者 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ndustrial所有權에 關한 內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 바랍니다.

- ◎論文 : 200字 原稿紙 20~50枚 (번역문포함)
- ◎우리社의 特許管理 : 15~30枚 内외
- ◎發明成功事例(職務發明 우대) : 30枚 内외 (추후 단행본으로도 製作됨)
- ◎나의 提言 : 10枚 内외 (Industrial所有權法 改善사항에 한함)
- ◎Industrial所有權 수집 : 10枚 内외 (外國視察記포함)
- ◎기타(社內消息·新製品 紹介)
- ◎接受期限 : 수시접수
-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査部 「月刊 發明特許」編輯室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内)

本會에서는 對民서서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야래◎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金額 : 枚當 100원 (從前과 同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